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83회 임시회 (2026. 4. 22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권 하 나

### 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6-49
- 나. 제출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6년 4월 8일(수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6년 4월 15일(수)

### 2. 제출사유

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맞춰 내용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에 근거한 내용 정비(안 제2조)
- 나. 위촉직 구성 인원의 성별 비율에 대한 기준 명시(안 제3조)
- 다. 위원의 해촉 사유 구체화(안 제4조의 2)
- 라. 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일부 수정(안 제8조)
- 마.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1)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1조(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6. 3. 5.~2026. 3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## 5. 검토보고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4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,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.

### 나.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현황

-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1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되는 위원회로서, 지역 청소년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.

- 동 위원회는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·지원, 청소년 건전육성·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,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, 청소년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대책 마련,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·조정 등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.
- 위원회는 현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총 9명(당연직 3명, 위촉직 6명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여 정책 심의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.

###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현황

- 연도별 개최 실적

(2026년 3월 기준)

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-	-	-	1회	2회	1회

※ 2026년 제2차 정기회의 10월 개최 예정

- 청소년육성위원회 정기회의 주요결과

구분	행사일시	주요제언
2026년 1차	2026.3.26.(목) 11:00~12:00	· 청소년수련시설 학교연계 사업 확대 · 청소년 보호 시스템 구축 ·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개선 검토
2025년 2차	2025.12.22.(월) 15:00~16:00	· 2026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심의(원안가결) · 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 일제 정비 검토 · 홍대 레드로드 현장 중심 청소년프로그램 확대
2025년 1차	2025.7.21.(월) 14:00~15:00	· 마포구 청소년 관련 사업 현황 보고 ·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· 멘헤라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
2024년 1차	2024.12.20.(금) 14:00~15:00	· 2025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관련 사업 활성화 논의 · 관내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홍보 강화

- 최근 회의 운영 실적을 보면, 2024년 1회, 2025년 2회, 2026년 1회 (3월 기준) 개최되는 등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2026년에는 추가 정기회의가 예정되어 있음.

- 또한,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으며, 2026년 기준 연간 약 12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임.

## 다. 주요 내용

### (1) 상위 법령에 근거한 내용 정비(안 제2조)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함.
- 청소년유해환경 정의에 “청소년폭력·학대”를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함.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능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“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	제2조(기능) ① -----
1. 청소년단체, <u>청소년보호관련</u> 민간단체의 육성·지원	1. ----- <u>청소년보호 관련</u>
2. 청소년 건전육성·보호시책의 평가 및 <u>제도개선</u>	2. ----- <u>제도 개선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청소년유해환경(「 <u>청소년보호법</u> 」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, <u>청소년유해약물</u> 등	4. ----- 「 <u>청소년 보호법</u> 」 제2조----- ----- <u>청소년유해약물등,</u>

<p>및 <u>청소년유해업소</u>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· 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 에 <u>올린 사항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 력·학대</u>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 <u>부친</u> 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(2)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 기준 명시(안 제3조)

-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.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<u>1인</u>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<u>부위원장 1명은 복지동행국장</u> 이 되며, 나머지 1명은 <u>위촉위 원</u>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<u>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 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위원은</u>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<u>1명</u>----- ----- --.</p> <p>② ----- <u>부위원장 1명은 교육체육국장-</u> ----- <u>위촉직 위원</u> -----.</p> <p>③ <u>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</u></p>

행정지원국장이 되며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삭 제
2. 청소년단체, 시민단체, 교사단체 및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3. 학부모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<신 설>

위원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삭제
2.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·민간단체·청소년단체·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3. 학부모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다만, 제3조제4항 신설과 관련하여 일부 입법기술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동 개정안은 기존 제3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 관련 규정을 제4항으로 이관하면서 각 호를 재구성하였으나, 신설된 제4항에 “1. 삭제”를 포함하고 있음.
- 일반적으로 “삭제” 표시는 기존 조문의 호를 제거하면서 번호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, 신설되는 조항에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체계상 부자연스럽고 조문의 명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.
- 따라서, 제3조제4항은 불필요한 “삭제” 항목을 제외하고 각 호를 재정비하는 등 조문 체계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신설>	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	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	<p><u>1. 삭제</u></p> <p><u>2.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·민간단체·청소년단체·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</u></p> <p><u>3. 학부모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	<p><u>1.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·민간단체·청소년단체·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</u></p> <p><u>2. 학부모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
--	--	--

(3) 위원의 해촉 사유 구체화(안 제4조의2)

- 기존 규정의 불명확한 해촉 기준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명확화함.
  - 자진 사퇴, 장기 질병·해외 체류, 비밀누설, 비위행위 등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 <u>한 차례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, 금품·향응수수, 성범죄 등 범죄와 연루된 경우와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,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<신 설>

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의2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
2.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(6개월 이상)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
	<u>5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
--	---

#### (4) 회의록 작성 기준 정비(안 제8조)

- 회의록 작성 주체 및 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.

현 행	개 정 안
<u>제8조(회의록)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의 직·성명, 회의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</u>	<u>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회의 안건,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, 심의·의결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

#### (5) 기타
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.

## 라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제처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반영한 것으로, 법적 측면에서 타당함.
- 또한,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, 위원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여 위원회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따라서,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반영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,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일부 조문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비가 필요하므로 해당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거나 수정가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한편, 「청소년 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3월 31일 국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며, 향후 시행 시 관련 제도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### (참고) 청소년 기본법 개정(안)

- 동 개정안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청소년**육성위원회**는 지방청소년**정책위원회**로 개편될 예정인 바,
- 현행 법령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위원회 명칭에 사용된 ‘육성’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청소년을 정책의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한계가 있으며, 청소년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-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은 위원회의 명칭을 ‘청소년**정책위원회**’로 변경하고, 지역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 위원회 간 기능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

**□ 「청소년 기본법」**

**제11조(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)**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.

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